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2 선고 2020가단5029906 판결 [원상회복,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

담당변호사 신중윤, 차재승, 이재원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, 박정은, 전현규

변론 종결 2021. 1. 26

판결 선고 2021. 2. 2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. 10. 19.자 청구취지 및

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대 130.9㎡ 토지와 그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원고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E 대 143. 5㎡ 토지와 그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피고 부동산'이라 한다)의 각 1/2지분의 공유자들이다.

다. 서울 관악구 E 대 143.5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1, 2, 3,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는 원고소유 담장(이하 '이 사건 담장'이라 한다)이 있었는데,피고들은 2019. 5. 10.경이 사건 담장을 철거했다.

라.원고는 2020. 7. 29.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을 F, G,H, I에게 매도했고, 이 사건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31. 접수 제152123호로 F, G, H, I을각 1/4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3, 5호증의 각 기재,변론전체의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, 피고들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을 훼손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,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있다.

나. 살피건대,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 정들 즉,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담장 철거와 관련하여 의사 교환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되나,피고들이 원고에게 명확한 배상 의사와 배상액에 관한 답신을 보내지는 않았던 점,원고 측과 피고들 측 사이에 2020.

10. 15.경 이뤄진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들 측은 원고 측에게 명확히 1,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단순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확한 배상 의사와 배상 액수 등이 합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원고가 제출한 갑 제4,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1,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유정훈

별지